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의 2 내지 제9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라 함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작성의무)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⑧ 각 작성항목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다.
- ⑨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제공) ①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동일 사업주에게 동일 대상화학물질 또는 동일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2회이상 계속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 또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2회 이후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또는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제3조 제1항 각호의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그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당해서류를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제16조(교육 실시시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 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